

## I. 논란 : 환경 그리고 WTO의 딜레마

- WTO에서의 무역과 환경 문제 논의의 본질은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의 도입이 특정국가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규제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하고 지구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주의를 실현하는데 있다.
- 최근까지 발생한 환경관련 무역분쟁은 최종 제품과는 무관한 생산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국내 및 환경협약국간의 규정을 타국 또는 환경협약 비당사국에 적용함으로써 촉발되었다.
- WTO는 '94년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환경과 관련된 10개 의제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주요 쟁점에 대한 참가국에 대한 입장차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결론 유도를 위한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그러나, WTO는 근본적으로 “제품” 또는 “제품의 특성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정 및 생산방법”에 관하여만 관할함으로써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정을 대상으로 무역규제조치를 하고 있는 환경협약에 대하여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향후 국내 환경 기준 및 환경세, 부과금 등 환경 제도를 개선할시에는 국내환경오염 저감이라는 환경적 측면과 함께 국제 무역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산업 경쟁력을 유지 또는 제고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당사자간의 긴밀한 협조와 연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1. 무역과 환경문제의 대두

80년대 이후 냉전의 와해로 국제적인 주요 논의는 그간의 산업화의 결과로 초래된 오존층파괴, 생물종의 멸종 및 기후변화 등 지구규모의 환경문제 발생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해결은 개별국가의 대응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환경보전과 지속적인 개발간의 조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발전 과정은 지구환경보전과 같은 뚜렷한 명분을 기반으로 환경보전을 위하여서는 필요한 경우 무역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환경론주의적 견해와 국제무역의 증대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촉진시키고 소득과 복지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는 빈곤을 타파하고,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재원조달을 가능케 한다는 입장의 자유무역론주의 간의 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논의의 이면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의 도입이 결과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도국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현재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취해지는 무역 조치와 다자간 무역체제와의 마찰 요인은 다음 항목에 집중되어 있다 :

- 다자간 및 지역 환경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취해지는 무역 제한 조치와 무역규범과의 관계
- 자국의 환경 보호를 위하여 개별 국가가 취하는 일방적 무역 제한 조치와 무역규범과의 관계
- extra-jurisdictionality : 자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조치 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하에서 역외의 환경문제에 관한 일방적 무역조치가 가능한가의 문제
- PPMs : 제품자체가 환경에 유해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제품의 제조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 & Production Methods)이 환경에 유해한 경우에도 무역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의 문제

이같은 갈등이 WTO 체제에 미칠 수 있는 모순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94년 마라카쉬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을 통해 개방적·무차별적·공평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유지하고 방어하는 것과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간에 모순이 있어서는 안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WTO내에 무역·환경위원회(CTE :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WTO/CTE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10개의 의제를 검토한 뒤 환경 보호를 위한 다자간 무역체제(MTS : Multilateral Trading System) 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에따라 본고에서는 이러한 WTO/CTE에서의 논의 과정이 시사하는 점과 우리의 대응책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GATT/WTO에서의 환경관련 분쟁 사례

잘 알려진바와 같이 GATT/WTO가 추구하는 기본 규범은 아래 주요 원칙에 의거한 자유무역주의 실현에 있다.

- 최혜국 대우(most favoured nation : MFN) 원칙 (제1조)
- 내국민 대우 원칙(제3조)
- 수량 제한금지 원칙(제11조)
- 일반적 예외(제20조)

환경 문제의 경우 일반적 예외조항인 제20조 (b)의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규정에 따라서 예외적인 무역제한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 범위 및 방법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자유무역주의 중심의 GATT/WTO 체계와 다자간환경협약(MEA : Multilateral Trade Agreement)이 대부분 허용하고 있는 무역제한조치와의 모순을 극복하여야 하는 문제가 미결 과제로 남아 있다.

환경과 무역의 분쟁에 대한 GATT의 개입은 Tuna I 사례와 NAFTA의 환경협상으로 촉발되어졌다.

이 두가지 사례는 무역과 환경에 있어서의 WTO/GATT 체계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 준 사례이기도 하다.

### 1) Tuna I 사례

Tuna I 사례는 미국이 1990년에 국내 규정에 어긋나는 공정 및 생산방법(PPMs : Products or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에 의해 참치잡이를 하는 동태평양 국가와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개하는 국가에 대해 금수조치를 취함으로써 촉발되었다.

이같은 분쟁의 발단은 매우 오래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1950년대 초 동태평양(ETP : Eastern Tropical Pacific) 연안의 참치잡이 어부들이 참치와 돌고래와의 생태 관계를 이용한 새로운 참치잡이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어부들은 돌고래 집단의 하부에 참치떼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고, 오무려지는 예인망으로 돌고래 집단을 포위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얼마나 많은 돌고래를 포위하는가가 참치

어획량을 결정하게된 것이다. 이같은 방법은 참치잡이의 효율을 증가시켰으나, 한편으로 그물망에 갇힌 돌고래를 죽이거나 심한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았다. 초기에는 이 같은 방법이 심각한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으나 관련 기술은 점차 발달하였다. 그물망의 길이는 1.2Km에 달하였고 깊이는 90m를 넘어서게 되었다. 따라서 어부들은 전부다 훨씬 많은 참치를 잡을 수 있게 되었고, 과거의 미끼 보트(bait boats)에 의한 방식은 쇠퇴하였다. 1959년에는 한번에 590마리의 돌고래를 가둘 수 있게 되었고, 이듬해에는 무려 5,400마리를 가둘 수 있게 되었다. 이후로도 포획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쾌속보트가 도입되고 돌고래떼를 포획하기 위하여 헬리콥터나 비행기를 사용하는 등 관련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였다. 1965년 48,673톤이었던 어획량은 1980년에는 189,426톤에 달하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참치잡이 효율의 증가와 더불어 죽는 돌고래의 숫자도 매우 빨리 증가하였다. 미국의 어부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돌고래의 폐죽음을 막지 못한다면 이 기술의 사용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다 나은 방법의 개발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backdown method" 라는 것을 개발하였는데 이 방법은 그물망이 1/2 내지 2/3을 포위하였을 때 어선을 후진시켜 그물망의 높이를 낮추어줌으로써 돌고래가 도망갈 기회를 주는 방법이다. 둘째로는 미세망을 개발하여 돌고래에 상처를 주거나 빠져나가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고래의 치사율은 여전히 높아서 매년 300,000마리 수준으로 보고 되었다.

미 의회는 1972년 해양포유동물보호법(MMPA :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을 제정하고, 그물의 상승한계와 포획비율 등을 제한하였다. 동 법률의 발효로 인하여 돌고래의 죽음은 급속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별 어선의 점유 비율도 바뀌어갔고 결국 죽어가는 돌고래의 총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즉 1960년대에 90%였던 미국 선적의 선단이 1986년에는 총 103개 어선 중 34개로 33%에 불과하게 되었다.

국가별 동태평양 참치잡이선 선적 현황

국가	어선수	국가	어선수
United States	34	Spain	2
Mexico	43	Cayman Is.	1
Venezuela	15	Costs Rica	1
Vanatu	4	EI Salvador	1
Spain	2	Panama	1

자료 : Trade and Environment Database, USA

미 상무부는 타국 선단이 죽이는 돌고래의 비율이 미국 선단의 2배에서 4배가 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미 의회는 1984년 해양포유동물보호법에 직접통상금지(Direct Embargo Provision(\$101 (a) (2))) 조항을 삽입하고, 동태평양 연안 국가의 참치잡이 선단이 미국 선단과 같은 수준으로 돌고래 보호를 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후 의회는 상무부 장관에게 타국의 선단이 미국 선단의 1989년 수준의 2배, 1990년 수준의 1.25배 이상 돌고래를 죽이지 못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 같은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직접통상금지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참치 제품의 중개 국가에 대해서도 미국으로부터 참치제품에 대해 금수조치된 국가의 참치를 중개하여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다. 만약 중개국이 미국이 금수조치한 국가의 참치에 대하여 6일내에 금수조치를 하지 않거나 상무부 장관이 90일내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지 못하면 91일째부터는 중개국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멕시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파나마 등이 금수조치를 당하게 되었고, 에콰도르와 파나마가 미국의 요구를 수락한 반면 멕시코는 GATT에 불공정 무역으로 제소하였다.

GATT 패널은 미국의 국내 규정에 어긋나는 공정 및 생산방법(PPMs : Products or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에 의하여 제품이 생산된다는 이유로 수입제품에 대하여 차별 조치는 취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례는 이후에 WTO/GATT 내에서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상의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s, Annex 1.1)과 표준(Standards, Annex 1.2)의 적용 범위 또는 해석에 대한 뜨거운 논쟁의 계기가 되었다.

주요 쟁점 사항은 TBT 협정에 포함된 환경마크제도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

으로서 제품무관론 공정 및 생산방법(NPR-PPMs : Non-Product Related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의 포함 여부를 놓고 적용가능하다는 입장의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과 TBT협정 관할밖의 사항이라는 다수 개도국간에 현격한 입장차이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후에 다시 기술코자 한다.

## 2) NAFTA 협정

1992년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삼국은 북미무역자유협정(NAFT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 합의하였다. 협정은 각국의 비준 절차를 거친 후 1994년 1월 1일부로 발효되도록 하였다.

NAFTA는 ① 해당지역 무역 파트너간의 합의 사항이라 하여도 상당히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표방 ②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이루어진 사상 최초의 쌍방간의 무역협정 ③ 유일한 협정 당사국이 속한 대륙간을 포괄하는 통합 환경보호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간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우려는 상당한 수준이었는데 반하여 미국과 캐나다는 국경지역의 환경문제의 본질이나, 1937년의 Trail Smeiter 사례<sup>1)</sup>에서 Lobster 사례<sup>2)</sup>로 이어지는 과거의 무역과 환경에 대한 이슈들을 외면하였다. NAFTA 협정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세가지 측면의 환경적인 우려가 제기되었다.

첫 번째는 마퀼라도라 프로그램(maquiladora program)에 따라 미-멕시코 국경의 공업지역이 확장될 것이라는 점이다. 마퀼라도라 프로그램은 미-멕시코 국경지역에서 무관세로 생산설비, 기계류, 수리부품등을 멕시코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생산된 제품은 내국세만 내면 어느 국가로든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하다. 1965년 이후로 마퀼라도라 프로그램은 450,000명을 고용하는 1900개가 넘는 산업단지 규모로 성장하였다. 대부분의 성장은 1982년 멕시코 경제 붕괴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기초 생필품의 수출단가 하락과 낮은 임금에

1) 1937년 미-캐나다 국경지역에 위치한 아연과 납을 채광하고 제련하는 캐나다 회사가 콜롬비아 강을 오염 시키므로써 양국간에 발생한 분쟁;캐나다가 미국의 워싱턴시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배출기준에 합의한 사건

2) 1985년 북대서양의 바닷가재의 멸종을 막기위하여 미-캐나다간 채취량 제한에 관한 분쟁 사례 ; 이 사례는 미국에 수출되는 캐나다산 바닷가재의 정보 제공과 양국간의 바닷가재에 대한 권리 해석상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미-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을 준용하여 살아있는 바닷가재의 수입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짐.

기인하였다. 마킬라도라 공장은 전대미문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그에 반하여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과국을 맞이하였다. 많은 환경단체와 의원들이 미국내 수출산업체가 국경지역으로 대거 이동하여 그 지역의 환경에 좋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였다.

두 번째 우려는 멕시코의 미약한 환경과 법률의 기준이 미국의 강력한 환경 보호 기준을 손상시킬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다른 의미로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이 미국 기업들에게 미국내 환경오염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숨겨진 보조금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는 동 협약이 전세계적인 이슈인 열대우림의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멕시코는 1988년도에 미국의 1970년 제정 환경보호법(EPA :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을 근간으로하는 강력한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였다.

NAFTA의 환경협정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부시 행정부는 미-멕시코 국경에서의 통합 환경계획을 제안하였으나, 계획의 모호함 특히 장기간의 재원조달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

다른한편으로 NAFTA는 북아메리카환경위원회 협정(NAAEC :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mmission)을 창설하고 부속기구로 국경 계획 (border plan)에 대한 비평에 대한 대책반과 과거의 국경지역 환경 보호 실패에 대한 대책반을 두었으며, 협정 당사국인 삼국간의 공공의 환경 문제에 대한 법정 기능과 산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약국에 대한 지원,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환경정보와 전문적 의견을 지원하는 기능을 위임하였다.

NAFTA 규정이 가지는 GATT/WTO 체계에 대한 법률상의 이슈는 규약 제712조 1항에 관한 것이다. 이는 GATT의 일반적 예외 규정인 제20조 (b)항의 "the protection human, animal, or plant life"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서 무역자유조치에 대한 예외 조항의 적용 대상으로 "only to the extent necessary to achieve the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taking into account technical and economic feasibility."라 규정하는 대목이다.

이 항목에 대하여 제기된 이슈는 동 규정이 최종제품과 무관한 생산공정에 대한 표준(process standards)에 대해서도 무역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

를 포함하고 있다는 우려이며, 미국과 캐나다가 GATT/WTO 협상 과정에서 이를 지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다분히 의도적인 조치라는 의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동 규약이 공정의 잠재적인 유해성에 대한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GATT의 통보의무 및 투명성 보장 원칙에 모순되고 있다는 점이다.

GATT 패널은 이 조항을 “최소의 무역 제한조치(least trade restrictive)” 또는 “최소의 GATT 체제에 대한 모순(least GATT-inconsistent)” 라는 판정을 내렸으며, GATT 패널 판정에 대응하여 NAFTA는 “국제협약상 무역제한조치 규정은 무역자유화규범에 우선한다” 는 규정에 합의하였다.

위 두가지 사례는 GATT/WTO 체제가 유사한 두가지 사례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각종 다자간환경협약(MEA : Multilateral Trade Agreement) 당사국과 비당사국간의 무역 분쟁 시 GATT/WTO 체계에서의 취급방안, 범위 그리고 기준에 관한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 3. WTO/CTE에서의 논의동향

#### 1) WTO/CTE의 설립

WTO 협정은 협정전문,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생 및 식물위생협정(SPS : Sanitary and Countervailing Measure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1947 GATT 협정 등에 환경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WTO 협정체계

- WTO 설립협정과 동 설립협정의 부속서인 다자간 무역협정 (MTA : Multilateral Trade Agreement) 및 수자간 무역협정 (PTA : Plurilateral Trade Agreement)으로 구성
- 다자간 무역협정은 WTO 협정의 일부로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며 부속서 1, 2, 3으로 구성
  - 부속서 1
    - 부속서 1A : GATT 1994, 노산물 및 섬유협정, 동경라운드MTA code 일부, 기술장벽, 반덤핑, 관세평가, 위생 검역,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등
    - 부속서 1B : 서비스 협정(GATs)
    - 부속서 1C : 지적재산권협정(TRIPs)
  - 부속서 2 : 분쟁해결관련 양해 (DSU)
  - 부속서 3 : 무역정책 검토제도
- 수자간 무역협정(PTA)은 WTO협정의 일부이기는 하나, 이 협정을 수락하는 회원국에만 적용

환경과 무역관련 GATT에서의 분쟁은 10여건 정도인데, 대부분의 사례가 1980년대 후반 이후에 발생하고 있다. 미·EU등 선진국은 환경보호라는 대의 명분하에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기통상 이슈로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환경협약이 “비당사국에 대한 차별적인 무역제한” 규정을 내포하고 있어, GATT의 기축인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원칙에 위배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94년 4월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무역환경위원회(CTE :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를 설치하여 10개 의제에 관하여 검토 의견을 '96년 12월 싱가포르 각료회의에 제출토록 합의 한 바 있다.

**WTO/CTE 10개 논의 의제**

**의제(items)**

의제 1	환경협약상 무역조치와 다자간 무역체제와의 관계
의제 2	현저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국내환경조치와 다자간 무역체제와의 관계
의제 3A	환경목적의 부과금·세금과 다자간 무역체제와의 관계
의제 3B	다자간 무역체제와 환경마크와의 관계
의제 4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의 투명성과 관련된 다자무역체제 규정
의제 5	다자간 무역체제의 분쟁해결절차와 환경협약상 분쟁해결절차와의 문제
의제 6	환경조치가 개도국의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및 무역왜곡 조치의 제거가 미치는 환경적 이익
의제 7	국내 판금품의 수출금지 문제
의제 8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과 환경과의 관계
의제 9	서비스 협정과 환경 문제
의제 10	WTO와 여타기구(정부간·비정부간 기구)와의 관계

**2) WTO/CTE에서의 주요 의제별 논의동향**

**의제 1 : 환경협약상(MEA) 무역조치와 다자간 무역체제(MTS)와의 관계**

**가. 주요 쟁점**

- MEA상 무역제한 조치(대부분 GATT 1,3,11조 위반)를 WTO가 수용하는 방식 및 수용범위 문제
  - 환경목적 달성을 위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수정 및 변화의 필요성 여부

- 일방적 역외조치와 다자간 무역체제와의 관계
- MEA 체제와 MTS 간의 협력증진방안

**나. 환경협약(MEA)상의 무역조치 내용**

- 현재 발효중인 약 200여개의 환경협약 중 무역규제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협약은 총 19개
- 환경협약상의 무역조치 유형
  - 직접적인 무역조치
    - 수출금지, 수입금지, 수출입시 일정한 요건 부과
  - 간접적인 조치
    - 생산 및 소비금지, 대체 상품에 대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다. 논의 결과**

- 일방적 무역조치의 배경과 국제적 합의에 근거한 다각적인 접근 지지
  - 일방적 조치의 배경에 대해 미국이 반대 입장을 고수
  - 월경성 및 지구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합의에 근거한 다자적 조치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을 강조
- 무역조치의 필요성 문제
  - 환경협약의 목적수행을 위해 일차적으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등 긍정적 조치가 중요함과 특정한 경우 구체적으로 합의된 규정에 근거한 무역조치가 MEA의 환경적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는 내용을 균형있게 진술

주요 환경협약상의 무역조치 내용

협약명	무역제한조치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당사국에 대한 수출금지 및 수입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당사국이 규제물질을 비당사국에 대하여 수출 및 수입하는 것을 금지</li> <li>- 비당사국으로부터 규제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수입 금지</li> <li>- 당사국은 규제물질의 생산기술을 비당사국에 이전하여서는 아니됨.</li> <li>- 당사국은 규제물질의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제품, 시설 또는 기술을 비당사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보조금, 원조, 금융 또는 보험상 지원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함.</li> </ul> </li> <li>■ 당사국간의 무역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국간의 무역 허용</li> <li>- 그러나, 규제물질의 생산 및 소비가 규제일정에 따라 감축되므로 당사국간 무역규제가 자연적으로 발생</li> </ul> </li> </ul>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폐기물로 지정된 폐기물의 비당사국에 대한 수출금지</li> </ul> </li> <li>■ 당사국간의 무역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 목적의 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폐기물의 OECD 국가로부터 비OECD 국가로의 이동 금지(당사국 비당사국 불문)</li> </ul> </li> </ul>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무역제한 조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대상 종의 멸종위기 정동에 따라 부속서 I · II · III으로 구분하고 차등무역규제 시행</li> <li>- 부속서 I : 상업적 목적의 국제 거래가 공식 금지되는 종</li> <li>- 부속서 II : 일정한 요건하에 교역을 허용할 수 있는 종(수출입 국가의 허가에 따른 제한적인 교역)</li> <li>- 부속서 III : 각 당사국이 자국내 특정 동·식물을 지정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무역규제를 할 수 있는 종</li> </ul> </li> </ul>
생물다양성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국간 무역거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자원의 보유국에 대하여 동 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함으로써 동 자원에 대한 접근과 거래가 제한된다는 점을 규정</li> </ul> </li> </ul>

- MEA상의 무역조치와 WTO 규범과의 관계
  - 현행 WTO 규범에 환경목적의 무역조치를 수용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가 있다는 점 확인
  - 국내적 차원에서 환경 및 무역담당관간의 긴밀한 합의가 필요함을 지적
  - MEA 당사국간 무역조치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희박한 점 인식
  -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에 합의
  
- MEA와 WTO와의 협력 필요성
  - 양기구 사무국간의 협력 명시
  - MEA가 CTE의 관련논의에 읍저버로 참가하는 방안 강구에 합의
  
- MEA와 WTO간의 분쟁해결 체제
  - 기본적으로 WTO 회원국이 WTO의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 인정
  - 단, WTO 당사국으로 공히 MEA 당사국간에 MEA상 무역조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급적 MEA의 분쟁 해결 체제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
  
- 의제 1에 대한 최종 결론
  - 의제 1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타결

## 의제 5 : 다자간 무역체제의 분쟁해결절차와 MEA상 분쟁해결절차와의 관계

### 가. 주요 쟁점

- WTO 회원국간에 MEA상 무역조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WTO 및 MEA 분쟁해결 절차의 관할권 문제
- WTO/DSU에 환경전문가 활용문제 및 MEA 분쟁 절차에 무역전문가 활용문제
- WTO 분쟁해결절차의 NGO 참여문제

### 나. 논의 결과

- 동 의제는 의제 1과 연계되어 논의됨
- 분쟁의 회피 또는 예방을 위한 투명성 제고, 조정·협의를 중요성이 강조됨
- MEA상 무역조치와 관련된 분쟁발생시 관할권 문제
  - MEA 당사국간의 무역분쟁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WTO 회원국이 MEA 분쟁해결절차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선진국)
  - MEA 분쟁 해결절차는 WTO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들어 선진국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 제시(개도국)
  - WTO 회원국인 MEA 회원국 및 비회원국간 분쟁 발생의 경우에는 MEA 비회원국이 MEA 분쟁해결 절차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WTO/DSU를 활용할 수 있다는 중론이 형성되었으며, 이 경우 환경분야 전문가의 의견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제기됨.

**의제 2 : 현저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국내환경조치와 다자간무역체제와의 관계**

**가. 주요 쟁점**

- 타의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환경정책(예 : 배출부과금, 재정보조금, 예치금)과 MTS와의 관계

**나. 논의 결과**

- 특별한 결정사항 없음
- 배출부과금 등 시장기능에 근거한 환경정책이 보다 유연성 있고 투명한 점이 강조되었으나, 동 정책의 입안 및 적용방법에 따라서는 현저한 무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이 제기
- WTO 농업보조금 및 상계조치(SCM :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상 허용되는 환경보조금의 영향과 관련, SCM이 환경적 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 및 WTO 규정이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을 조장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

**의제 3A : 환경목적의 부과금·세금과 다자무역체제와의 관계**

**가. 주요 쟁점**

- 국경세 조정(BTA : Border Tax Adjustment)에 관한 GATT 규범을 환경세 및 부과금에 적용 가능한지의 여부
- 제품무관론 PPMs에 부과되는 환경세가 BTA 대상인지의 여부

**나. 환경세 및 부과금의 종류**

- Taxes & Charges
  - 배출세 및 부과금(Emission taxes or charges)
    - 폐기물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시 오염도 등에 기준하여 부과
  - 제품세 및 부과금(Product taxes and charges)
    - 생산 및 소비단계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물

- 품에 부과하는 조세 및 부과금
- 자동차, 농약, 타이어, 배터리, 플라스틱제품, 오존파괴 화학물질, 제품 포장지 등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과금을 청함

- Subsidies
  -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 보조금의 종류로는 grants, rebates, soft loans, deferrals, exemption 등이 있음
- Deposit refund schemes
  - 환경오염의 잠재성이 있는 제품구매자에 대해 예치금을 부과하고, 동제품 또는 잔여물이 재활용 목적으로 회수될 경우 예치금을 환급해주는 제도
- Tradeable emission schemes
  - 현재 배출권거래 제도는 대부분 국내 차원에서 대기오염 규제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음.
  - 특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그 한도까지의 배출권리는 개별 사업자의 권리로 허용하되 그 한도치를 초과하는 경우 외부에서 추가적인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그 한도치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잔여량을 판매하게 하는 제도

**다. 환경세와 국경세와의 관계**

- WTO 규정상 국경세는 간접세만이 조정 대상임
  - 조세 조정에 관한 GATT 원칙은 수입품 및 수출품에 공히 목적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따라서 수출품은 수출시 국내소비품인 동종상품에 부과되는 조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수출품이 소비되는 지역의 조세체계에 따라 조세가 부과됨.
  - 직접세
    - 생산자(producer)에 부과되는 조세
    - 임금, 이윤, 이자, 지대, 사용료 및 기타 모든 소득에 대한 조세와 부동산 소유에 대한 조세



- 간접세
  - 제품에 부과되는 조세
  - 판매세(sales taxes), 물품세(excise taxes), 부가가치세(taxes on value added) 등
- 환경제품세와 환경공정세
  - 환경제품세는 사용 혹은 소비 단계에서 오염을 야기하는 제품에 부과되는 세제(간접세 성격)
  - 환경공정세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생산공정(PPMs) 및 시설에 부과되는 세제(직접세의 성격)
- WTO 규범하의 국경세 조정문제
  - 간접세 성격인 환경제품세에 대해서는 국경세 조정이 가능하나 환경공정세는 직접세 성격이므로 수출제품에 대한 직접세의 환급은 보조금 지급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

#### 라. 논의 결과

- 국경세 조정은 제품에 부과되는 간접세에만 한정됨.
- 제품무관련 PPMs에 부과된 환경세 및 부과금의 국경세 조정관련, 개도국은 국경세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선진국은 허용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대한 세부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견지

**바. GATT 체제가 환경세에 미치는 영향**

- WTO 현 규범하에서 누적 과세제도(cumulative indirect taxes)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에너지 등 투입요소의 간접세에 대한 수출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
- 따라서 고유 에너지세의 도입은 자국 수출품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큼.
- 만약 과세제도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수출품의 투입요소에 대한 간접세가 국경세 조정대상이 될 경우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의 경우 에너지세 도입이 유리할 수도 있음.

**의제 3B : 다자간 무역체제와 환경마크(Eco-labeling)와의 관계****가. 주요 쟁점**

- 환경마크는 수입국의 환경보호를 위한 자발적 조치이나 수입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무역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
- 제품무관련 PPMs에 근거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협정 적용 여부

**나. 논의 결과**

- 자발적 환경마크제도에 대한 TBT 협정의 소관여부에 대한 결정 유보
- 제품무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NPR-PPMs : Non Product Related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에 근거한 자발적 환경마크제도에 관해서는 미국, 캐나다, EU가 TBT 협정이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반면 다수 개도국이 NPR-PPMs는 TBT 협정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함.
- 환경마크제도의 투명성의 증진을 위해 TBT 협정의 투명성 관련 조항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결의

**다. NPR-PPMs 논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TBT 협정이 NPR-PPMs에 근거한 환경마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 TBT 협정의 주요 기본 원칙 및 각종 투명성 확보의무가 제품무관한 환경마크제도의 무역장벽화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단, TBT협정상 NPR-PPMs에 근거한 기술규정, 표준 등을 인정하는 경우, 현 국제무역규범이 제품무관한 PPMs에까지 확대됨으로써 동종 상품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가 요구되고, 동 기준을 기반으로 한 무역조치를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위험성을 포함.
- TBT 협정에 NPR-PPMs에 근거한 환경마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 실질적으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경우 현 WTO 규범하에서 이를 규율할 규정이 없음.

#### 의제 4 :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의 투명성과 관련된 다자무역체제 규정

##### 가. 주요 쟁점

- 무역과 관련된 환경조치의 투명성 제고 방안 및 관련 정보에의 접근방안
- 기존 투명성 규범의 충분성 여부 및 신규제도 설치 필요성 여부

##### 나. 논의 결과

- WTO 투명성 관련 규정이 무역과 환경정책의 상호 지지적 이행 및 발전에 근간임을 확인
- 무역관련 환경조치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현행 WTO 규범을 수정할 필요가 없음에 중론 형성
- WTO 투명성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이 때때로 회원국간에 동일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통보의부에 대한 해석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
- WTO 사무국이 중앙집중등록처로부터 무역관련 환경조치의 모든 통보정보를 입수, 별도의 데이터베이스화할 것을 권고

## 4. 결론 및 우리의 대응

### 1) GATT/WTO의 딜레마

GATT/WTO의 규율대상은 “제품” 또는 “제품의 특성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 국한되는데 반하여, 대부분의 환경목적의 무역조치가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GATT 차원의 개입 범위에 제약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일부 환경정책 및 조치가 무역효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국의 환경세 및 특정기술규정(특히, 예치금 환불제도, 재생내용물 함유 요건, 재활용 요건)등에 대한 GATT/WTO 규율 적용은 여전히 모호하며, 이해 당사국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환경마크제도의 경우, 무역효과가 있으나, 자발적으로 시행되면서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PPMs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GATT/WTO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됨으로써 다자간무역체제의 설립 기축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무역·환경간 마찰의 해결 수단으로서는 무역제한조치 보다는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이 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으나 GATT/WTO 규범은 직접적인 재정지원 또는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결여되어 있어 환경보전이라는 뚜렷한 명분을 표방하고 있는 다자간환경협약(MEA)상의 제도들에 대한 통제력에 스스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 2) 무역과 환경연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WTO/CTE에서의 무역·환경문제 논의는 환경과 무역 관련 이슈를 구체화-세분화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참가국의 입장을 명료화함으로써 향후 각 이슈별 결론 유도를 위한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경각심이나 두려움보다는 국제질서에서의 무역과 환경의 연계 문제의 실체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우리의 국내환경

및 산업 현실 속에 해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소극적이고, 저항적이며 무역우선주의적인 일방의 시각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환경보호추세를 적극 수용하여 이를 우리의 산업과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내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대한 검토는 아래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이 제공되는 시스템 체제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제도 자체가 제공하는 환경오염 저감 측면의 효과
- MTA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적용 방법론(관세환급 등)
- MEA에서 허용하는 정부차원의 지원 방법론(금융지원, 보조금 지급 등)
- MTS 또는 MEA가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론상의 투명성

만약, 어느 국가가 국내적으로 에너지세, 탄소세, 공정에 대한 배출부과금, 총량규제 등 NPR-PPMs에 대한 조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강화할 계획이 있다면 WTO 협상과정에서도 NPR-PPMs에 대한 국경세 조정 또는 환경마크 제도의 허용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 국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배출권거래제 등 제품무관한 공정 및 생산 방법(NPR-PPMs)에 대한 환경규제의 강화 또는 도입시에는 환경오염 저감이라는 직접적인 환경효과 측면과 함께 국제 무역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산업 경쟁력을 유지 또는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시기, 실시방법, 조세 제도 등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손 태 청 (환경경영개선팀 수석연구원)